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동의의결 신청요건 강화 〉

■ 박충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289호)

2024. 9.

정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황 승 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박충권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4. 7. 2.
- (3) 회 부 일 : 2024. 7.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의의결제도를 통해 사업자 스스로 경쟁제한상태 등의 자발적 해소, 소비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피해구제, 거래 질서의 개선 등에서 적합한 시정방안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건의 신속한 종결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애플코리아의 경우 2021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1,000억원 규모의 동의의결안을 확정했으나 동의의결이 개시된 이후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중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스스로 제안한 시정방안을 이행하지 않는 등 행정 사각지대가 발생함.

이에 동의의결 신청 시 신청일 직전 6개월 동안 해당 행위의 중지 사실 및 자발적으로 추진한 소비자 피해구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거짓으로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동의의결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89조 및 제124조).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동의의결 신청 시 신청일 직전 6개월 동안 해당 행위의 중지 사실 및 소비자 또는 다른 사업자 등의 피해구제와 관련하여 자발적으로 추진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해당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 신·구조문 대비표 >

[illegible]

현행	개정안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를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1. ~ 3. (생략) <u><신설></u>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u>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u> 1. ~ 3. (생략) <u><신설></u> ③·④ (생략) 제12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3. (생략)	----- ----- ----- -----. 1. ~ 3. (현행과 같음) <u>4. 제2항제4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u> ②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 및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1. ~ 3. (현행과 같음) <u>4. 동의를결 신청일 직전 6개월 동안 해당 행위의 중지 사실 및 소비자 또는 다른 사업자 등의 피해구제와 관련하여 자발적으로 추진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u> ③·④ (현행과 같음) 제124조(벌칙) ① ----- ----- ----- -----. 1. ~ 13.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u><신설></u> ② (생략)	14. 제89조제2항제4호의 서류를 <u>거짓으로 작성·제출한 자</u> ② (현행과 같음)

○ 현행법 상 동의의결 미이행 시에는 이행강제금¹⁾ 부과가 가능하며, 동의의결의 이행이 모두 완료되기 전까지는 처분시효의 진행이 정지²⁾되고, 동의의결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을 취소하고 심의절차를 계속³⁾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현행의 동의의결 이행 확보를 위한 여러 제도에도 불구하고 동의의결의 적정한 이행이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⁴⁾⁵⁾가 있

-
- 1) 제92조(이행강제금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 시 정한 이행기한까지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2) 제90조(동의의결의 절차) ⑩ 제80조제4항 및 제5항의 기간은 신청인이 제89조제1항에 따라 동의의결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인 및 동일한 사건으로 심의를 받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진행이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남은 기간이 진행된다.
1. 신청인이 동의의결의 신청을 취소한 때
 2.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
 3.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
 4. 동의의결의 이행이 모두 완료된 때
 5. 동의의결이 취소된 때
- 3) 제91조(동의의결의 취소)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1. 동의의결의 기초가 된 시장상황 등 사실관계의 현저한 변경 등으로 시정방안이 적정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신청인이 제공한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로 동의의결을 하게 되었거나,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의의결을 받은 경우
 3.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의결을 취소한 경우 신청인이 제89조제1항에 따라 동의의결을 하여줄 것을 신청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시 동의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동의의결을 취소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9조제3항에 따라 중단된 해당 행위 관련 심의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다.
- 4)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2022년도 10월 7일)

음. 이에 개정안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사전에 일정기간 동안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중지하고 및 자발적 시정방안을 실시한 경우에만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다만, 개정안과 같이 동의의결 신청시 신청일 직전 6개월 동안 해당 행위의 중지 사실 및 소비자 또는 다른 사업자 등의 피해구제와 관련하여 자발적으로 추진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동의의결 신청요건을 강화하는 경우 사업자의 부담 증가로 동의의결 신청 자체가 감소할 우려가 있으며,⁶⁾ 최소 6개월 간 해당 행위 중지, 자발적 피해 구제 등의 조치를 거친 후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게 되므로 신속한 사건 해결이라는 동의의결제도의 취지⁷⁾를 살리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보임.

○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 확정 후 시정방안을 불이행하는 등

5) 공정위, 자발적 시정조치 기한 어긴 애플에 200만원 강제금, 중앙일보, 2021.11.22.

6) 참고로 2021년도 이후 동의의결 처리 건수는 7건(4건 인용, 3건 기각)으로 현행하에서도 동의의결의 활발한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7) 김윤수,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제 도입 및 향후 운용방향”, 「경쟁저널」 제160호, 2012, 16면

동의의결제가 도입되면서 사업자와 협의를 통하여, 기존의 시정조치에서는 부과하기 어려운 소비자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방안 등을 위한 다양한 시정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시장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업자나 이해관계인 등과의 협의를 통하여 시장상황에 가장 적절한 방안을 설계함으로써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시장질서를 회복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도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사건처리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위법 판단을 받지 않기 때문에 법위반에 따른 기업 이미지의 실추를 방지할 수 있는 효용이 있다. 공정위 역시 복잡한 위법성 판단 및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상당부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제시한 행위중지·피해구제 등의 시정방안이 거래질서 회복 등 법상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공정위가 이를 의결하고 사업자는 공정위가 의결한 시정방안을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중지·피해구제 등의 선이행을 동의의결 신청 요건으로 하는 것은 동의의결 체계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109